-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457호

2020. 05. 12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4. 29. 조진호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05. 01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2020. 05. 12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조진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"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"에 대한 정의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정의 중 "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"에 대해 단서를 신설(안 제2조제1항제2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 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○ 관련 법령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정함으로서 공정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○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제1항제2에서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관련 상위법령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지침이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음.

○ 참고로 우리구를 비롯한 서남권 자치구에서는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로 인해 정신적·육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20년도에는 50,000,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.

【2019년도 남부권 구별 지원내역】

(단위 : 천원, 2019.12.31.기준)

사업 세부내역	양천	강서	구로	금천	영등포	법무부/센터
치료비	28,668	16,735	28,115	13,196	19,851	8,932
심리치료비	-	1,530	3,350	4,080	920	-
생계비	7,600	9,293	5,800	8,826	8,200	3,504
장례비	2,000	3,000	3,000	-	-	3,000
주거이전비	450	3,235	350	850	3,550	1,390
주거환경개선비	-	715	-	-	2,145	667
상담비	-	1,430	380	1,850	590	-
프로그램비	-	634	-	750	210	94
홍보비	2,281	2,581	1,005	4,550	533	-
사업비	4,000	5,845	3,000	5,861	4,000	-
총 계	**44,999**	**44,998**	**45,000**	**39,963**	**39,999**	**17,587**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양천구민이 생계, 심리치료 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9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